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 일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는 한편,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